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2.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2.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12.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과장 윤범수)

제안이유

-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안 제5조)
 -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운영(성실한 운영)
 -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 자산투자비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약 및 업무상 위반, 불성실 운영, 협약해지시 연고권과 소유권주장 금지 등
- 민간위탁 운영비 및 결산보고(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상위법에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꼭 민간 위탁하라는 규정이 있는가? ○ 수탁업자 선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소신있게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부실업체가 선정될 경우 경영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노사간 협상 결여로 파업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례에 파업시에 대해 협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과에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팀이 있음. 수탁자에 대하여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음 ○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사항이지 꼭 민간위탁하라는 규정은 없음 ○ 적격심사를 신중하고 철저히해서 입찰에 참여토록 하겠음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시 협약을 바로 해지하도록 하겠음 ○ 협약시 규정하겠음

- 조례 제8조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경영상 부실 등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 수탁업체를 감사할 수 있는가?
- 민간위탁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
- 공개경쟁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가?

- 협약서에 별도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협약할 것임
- 감사보다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임
- 까치울 정수장 준공으로 40여 명의 직원이 소요되므로 구조조정되지는 않을 것임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관련 제420호
의결년월일	2000. 12. 23 (제83회)

제출년월일 : 2000. 12.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안 제5조)

-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운영(성실한 운영)
-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 자산투자비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약 및 업무상 위반, 불성실 운영, 협약해지시 연고권과 소유권주장 금지 등
- 민간위탁 운영비 및 결산보고(안 제8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부천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업무 및 의무) ①하수처리장의 수탁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분뇨처리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하수처리장의 수탁자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2.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3.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장구

제6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 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수탁협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경우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관리운영비) ①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수탁협약에 의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2.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2.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12.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하수과장 윤범수)

□ 제안이유

-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안 제5조)
 -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운영(성실한 운영)
 -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 자산투자비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약 및 업무상 위반, 불성실 운영, 협약해지시 연고권과 소유권 주장 금지 등
- 민간위탁 운영비 및 결산보고(안 제8조)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상위법에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꼭 민간 위탁하라는 규정이 있는가? ○ 수탁업자 선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소신 있게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부실업체가 선정 될 경우 경영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노사간 협상 결어로 파업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조례에 파업시에 대한 협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과에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팀이 있음. 수탁자에 대하여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음 ○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사항이지 꼭 민간위탁하라는 규정은 없음 ○ 적격심사를 신중하고 철저히 해서 입찰에 참여토록 하겠음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시 협약을 바로 해지하도록 하겠음 ○ 협약시 규정하겠음

- 조례 제8조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경영상 부실 등으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 수탁업체를 감사할 수 있는가?
- 민간위탁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
- 공개경쟁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가?

- 협약서에 별도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협약할 것임
- 감사보다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임
- 까치울 정수장 준공으로 40여 명의 직원이 소요되므로 구조조정 되지는 않을 것임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420호
의결년월일	2000. 12. 23 (제83회)

제출년월일 : 2000. 12.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시설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의무부여(안 제5조)

-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운영(성실한 운영)
-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 자산투자비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위·수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약 및 업무상 위반, 불성실 운영, 협약해지시 연고권과 소유권 주장 금지 등
- 민간위탁 운영비 및 결산보고(안 제8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부천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업무 및 의무) ①하수처리장의 수탁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분뇨처리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하수처리장의 수탁자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2.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3.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강구

제6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 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제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수탁협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경우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관리운영비) ①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수탁협약에 의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